

등록번호	복지정책과-1106
등록일자	2026. 1. 12.
결재일자	2026. 1. 12.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	생활복지국장
			전결 2026. 1. 12.
심경임	김성철	김철우	이두영
협조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2026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1,680명(해운대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지급금액
 - ▶ 6·25 참전유공자(200명): 시비 130천원~150천원, 구비 80천원
 - ▶ 월남 참전유공자(1,480명): 시비 130천원~150천원, 구비 50천원
- 예산액: 3,700,800천원(시비 2,620,800천원 / 구비 1,080,000천원)
- 지급기간: 2026년 1월 ~ 12월(매월 25일 지급)
- ※ 전년도와 달라진 점
 - 만90세 이상 참전유공자 시비 20천원 증액 → 월 150천원 지급
 - 월남 참전명예수당: 구비 10천원 증액 → 월 50천원 지급
- ※ 기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회 / 200천원(구비)



복지정책과

2026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계획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에게 2026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예우 및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I 지급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II 지급개요

1 지급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및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의
조건을 충족한 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현황

구분	참 전 유 공 자 수			비고
	계	6·25참전	월남참전	
대상자 수(명)	1,610	180	1,430	2025년 12월 대상자 기준

② 지급금액

○ 지급금액

구분	대상자	지급액(천원)			비고
		계	시비	구비	
6·25참전	만90세 이상	230	150	80	시비 20천원 증액, 구비 변동 없음
	만90세 미만	210	130	80	2025년과 동일
월남참전	만90세 이상	200	150	50	시비 20천원 증액, 구비 10천원 증액
	만90세 미만	180	130	50	시비 2025년과 동일, 구비 10천원 증액

○ 지급기간: 2026. 1월 ~ 12월(매월 25일 지급)

○ 소요예산: 3,700,800천원

▶ 시비: 2,620,800천원(130천원 × 1,680명 × 12월)

☞ 2026년 본예산 기준, 추경 편성 시 시비 인상분 반영 예정

▶ 구비: 1,080,000천원

- 6.25참전유공자: 192,000천원(80천원 × 200명 × 12월)

- 월남참전유공자: 888,000천원(50천원 × 1,480명 × 12월)

○ 수당 지급현황

▶ 시비

구분	2012년	2013~ 2014년	2015년	2016~ 2017년	2018년	2020~ 2024년	2025년	2026년
금액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80천원	100천원	130천원	130천원 ~150천원

▶ 구비

구분	6·25참전							월남참전			
	2018년	2019~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20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금액	10천원	20천원	50천원	50천원	50천원	60천원	80천원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③ 기타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① 지급대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

② 지급금액: 200천원 / 1회

③ 지급시기: 사망위로금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사망위로금 신청기간은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④ 소요예산: 24,000천원(200천원×10명×12월 / 구비)

Ⅲ 세 부 계 획

① 대상자 확정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명부제공

▶ 매월 10일까지(市→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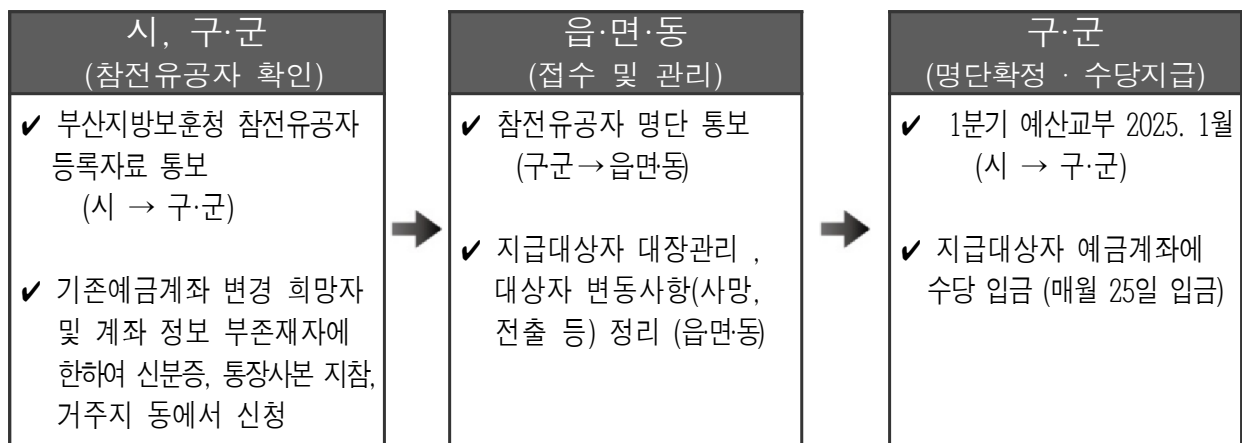
① 제공받은 참전유공자 명부를 전달 명단과 상호대사

② 주민등록 조회하여 1차 자격 확인

③ 신규신청 및 전입자의 경우 보훈청에 적격여부(제외대상자) 확인

▶ 명부 확정 : 매월 20일까지(區)

○ 신청접수 및 지급절차



② 지급방법

○ 지 급 일: 매월 25일(단,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

○ 지 급 액: 월남 참전유공자 ☞ 월 180천원~200천원

6.25 참전유공자 ☞ 월 210천원~230천원

○ 지급방법: 개인별 거래은행 통장으로 본인·계좌 입금원칙*

*** 대리수령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함**

- ①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채권 압류 시
-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④ 그 밖에 대리수령인을 지정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 대리수령인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 대리수령 신청서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계좌입금 원칙

**** 지급대상자의 본인계좌불가 및 대리수령인도 없는 경우 현금지급 가능**

- ▷ 현금 지급 시 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 【붙임7】 교부

○ 지급중단: 사망, 전출, 부적격 통보 시

○ 환수조치

-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 되거나 발견된 때
- ▶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 공법상 채권소멸시효 5년(지방재정법 제82조)

③ 대상자별 수당지급 세부기준

구 분	참고사항	비고
신규대상자	보훈청에 등록 <u>신청한 달</u> 부터 지급	
사망자*	<u>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u> 은 전액 지급	
탈락자	보훈청(시)에서 탈락자 <u>통보된 달</u> 부터 미지급	
전출자 (구·군, 타시도)	1일이라도 거주한 <u>전출지</u> 에서 지급 예) A구 → B구(타시도) 전출자(전출일 2026.1.2.) 2026.1월분 수당은 A구에서 지급	매월 15일한 전입지 통보
전입자** (구·군, 타시도)	<u>전입일 익월</u> 부터 지급 예) A구(타시도) → B구 전입자(전입일 2026.1.2) 2026.2월분 수당부터 B구에서 지급 단, 매월 1일 전입자는 전입 구에서 당월부터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액으로 미산정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개정조례 적용 (2019.1.1.)

* 사망자의 계좌정지로 입금이 어려운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

** 전입자 및 신규대상자의 경우 명단 통보가 늦은 경우 소급지급 가능

IV 행정사항

① 복지정책과

- 참전명예수당 지급계획 유관부서 및 동 주민센터 알림 : 1월 초
- 전출자 명단 송부 : 매월 15일까지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확정 : 매월 20일
- 수당 지급대상자 예금계좌(본인) 입금 조치 : 매월 25일

② 동 주민센터

- 타 시·도 전입자 수당 신청서 접수 및 통보(동→복지정책과)
-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신청서 접수 및 통보
- 미지급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접수 및 통보

- 붙임 1.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1부
 4. 참전명예수당(수당포기.수령회복) 신청서 1부
 5.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신청서 1부
 6.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1부
 7. 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 1부
 8. 미지급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9.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1부
 10.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11.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붙임 1】

참전등록번호										
참 전 명 예 수 당 지 급 신 청 서										
참 전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수수료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없 음				
공동이용행정정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본								
<u>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u>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 정부법」 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계좌변경•수령포기(회복)•대리수령 신청서

2.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 조사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붙임 3】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보훈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변경 내용	변경구분 [] 예금계좌 변경 [] 현금지급으로 변경 [] 계좌입금으로 변경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변경지급 희망시기 20 년 월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합니다.

[illegibl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합니다) 사본(예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수수료 없음
------	--	-----------

【붙임 4】

참전명예수당 (수령포기·수령회복) 신청서

보훈번호												
참전명예수당 (수령포기 · 수령회복)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전화번호)
예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적용기간				
								당월의 15일 기준				
《수령포기 및 수령회복 사유 - 반드시 자필기재 할 것》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수령포기 · 수령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붙임 5】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3일	
지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유	☐ 한정재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월간)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한정재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법정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위와 같이 대리수령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대리수령인 해운대구청장(동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한정재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제 호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 승인서			
지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신청 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월간)					
대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인 과의관계	의				
	주소									
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해운대구청장(동장) 직인										

【붙임 6】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연 번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수당지급계좌			자격여부				비고 (이사,자격상실,사 망 등)
	보훈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 번호	주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6.25/ 월남전	지급월	사유	연락처	
	1111029144	김○○	300-----	12345	부산 연제구 --대로	우리					전입자		빨강색으로 기재
											신규자		

【붙임 7】

참전명예수당 현금수령증

보관용		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자 및 수령액	급여 내용	참전명예수당		
	수령일자	20 . . .	수령액	(원)
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절취선

교부용		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자 및 수령액	급여 내용	참전명예수당		
	수령일자	20 . . .	수령액	(원)
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8】

미지급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사람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		
	구분 [] 사망	신상변동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계	참전명예수당	년	월부터
		미지급기간	년	월까지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따라 위와 같이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동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1.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붙임 9】

참전등록번호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 공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수 수 료
※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없 음

【붙임 10】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 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2.13 조례 제15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22., 2022.12.13.>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2.>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7.22.>

제6조(사망위로금)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제1589호, 2022.12.1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